

안전점검전문기관 [] 등록 []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상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성별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
신청분야

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의2제1항·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[] 등록 []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.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.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,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.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(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)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) 5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) 가.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(법인을 포함한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.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*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	수수료 없음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외국인등록번호 :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면심사	→	기안·결재	→	등록결과 통보
--------	---	----	---	------	---	-------	---	-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(시·도)